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합니다.

2020년 6월 20일

경기도지사

1. 처분당사자 : 다음 업종의 영업주·종사자 및 이용자

계	다단계판매업체*	후원방문판매업체**	방문판매업체***
4,849	10	755	4,084

*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

**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후원방문판매

***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

※ 단,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·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판매,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

2. 처분내용 : 상기 업종에서의 집합홍보, 집합교육, 집합관측 등 일련의 집합금지

3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
4. 처분사유 :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, 특히 상기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. 처분기간 : 2020. 6.20. ~ 2020. 7.5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6. 20. 부터

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10. 문의처

이름	소속	직급	연락처	비고
최기홍	경기도청 공정경제과	지방행정사무관	031-8008-2267	-
조준하	경기도청 공정경제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	031-8008-2282	-
이진경	경기도청 공정경제과	지방행정서기	031-8008-2284	-

11. 처분 담당자

이름	소속	직급	비고
윤덕희	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	지방기술서기관	-
최문갑	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	지방보건사무관	-

끝